

## ◎기상청공고 제2023-91호

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'행정절차법'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07월 12일

기상청장

###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기후변화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체계를 정비하며, 예보와 특보를 세분화하는 등 예보 및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기상법」이 개정(법률 제19225호, 2023. 2. 14. 공포, 2024. 2. 15. 시행)됨에 따라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장소 및 관측된 자료의 효율적인 수집·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,

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계획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정하고, 태풍예보의 대상구역 및 내용을 신설하며, 기상현상별 특보의 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국가기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체계 정비(안 제2조 및 제4조)

국가기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구체화하고 계획수립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.

나. 기상관측망의 세분화(안 제4조의2, 제4조의3, 제4조의4, 제4조의5, 제4조의6 및 제5조의3 신설·안 제5조)

기상관측망을 지상기상·고층기상·해양기상·항공기상·도로기상·기상위성·기상레이더·기후변화 관측망으로 세분화하고 각 관측망별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.

다. 예보 및 특보 업무의 상세화(안 제8조의2, 제8조의3, 제8조의4, 제9조의2 및 제12조의2 신설·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, 제11조의2 및 제12조)

1) 예보 및 특보를 분리하고 기상현상별 특보의 기준을 정함.

2) 수문기상 정보의 내용 및 제공기간을 정함.

3) 태풍예보의 대상구역 및 내용을 정함.

4) 특보·해양기상특보 등의 통보처를 정비함.

5) 특보 및 예비특보의 통보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 등 기상청장이 수행하는 업무를 정함.

라.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(안 제20조의2 신설).

마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과학관을 설립·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및

기상청장과의 협의 절차를 정함(안 제20조의3).

바.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의 관측, 기상관측망의 운영, 특보 및 예비특보 등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(안 제23조 신설).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(35208)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 
정부대전청사 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
- 전자우편: [jhkim27@korea.kr](mailto:jhkim27@korea.kr)

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(전화: 042-481-7301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(<http://www.kma.go.kr>)의 「주요업무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」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